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

나. 재산상속인 등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개정)

재산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신청할 경우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정비

다.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 위임(안 제6조, 제8조, 제12조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을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조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 지시로 인한 면허연장 불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피해어업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재

산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신청인의 상속 사실 및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제3항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상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보상금의 지급권리가 상속된 경우로써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과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5조의2 관련)

1. 보상금의 산정기준

- 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보상을 위한 시설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을 포함한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 나. 이 법 제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에는 해당되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보상을 위한 시설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을 포함한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다. 나목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의 면허면적 또는 시설면적 중 가두리시설 면적과 관리사 및 작업대 등의 부대시설 면적, 수산종묘, 시설철거비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다음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면허면적과 시설면적은 면허 관련 행정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라.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등 보상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잔존가액 산정방법

- 가. 시설물잔존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시설면적 1㎡당 잔존가액은 34,200원으로 한다.

$\text{시설물잔존가액} = \text{시설면적(㎡)} \times \text{시설면적 1㎡당 잔존가액} \times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의 서류에서 시설면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면적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면허면적 1㎡당 잔존가액은 4,200원으로 한다.

$$\text{시설물잔존가액} = \text{면허면적(㎡)} \times \text{면허면적 1㎡당 잔존가액} \times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3. 종묘폐기비 산정방법

가. 종묘폐기비는 가두리 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양식하고 있던 종묘를 포함한 양식물의 폐기를 위한 비용으로 한다.

나. 종묘폐기비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시설면적 1㎡당 종묘비는 28,900원으로 한다.

$$\text{종묘폐기비} = \text{시설면적(㎡)} \times \text{시설면적 1㎡당 종묘비} \times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의 서류에서 시설면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면적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면허면적 1㎡당 종묘비는 3,400원으로 한다.

$$\text{종묘폐기비} = \text{면허면적(㎡)} \times \text{면허면적 1㎡당 종묘비} \times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4. 시설철거비 산정방법

가. 시설철거비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설면적 1㎡당 철거비는 4,100원으로 한다.

$$\text{시설철거비} = \text{시설면적(㎡)} \times \text{시설면적 1㎡당 철거비} \times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업면허증, 어업권원부 등의 서류에서 시설면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면적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면허면적 1㎡당 철거비는 600원으로 한다.

$$\text{시설철거비} = \text{면허면적(㎡)} \times \text{면허면적 1㎡당 철거비} \times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 보상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보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업종 및 면적	면허번호	어업 종류	면적(어업권)	면적(시설)
--------------	------	-------	---------	--------

③ 피해 발생장소 (구체적으로 작성)	④ 피해 발생일			
----------------------------	----------	--	--	--

⑤ 피해내용	피해명세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액(원)			

⑥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 또는 상수원 보호에 따른 면허연장 불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1부(같은 영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피해어업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및 재산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신청인의 상속 사실 및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상속대표자 선정서 1부(같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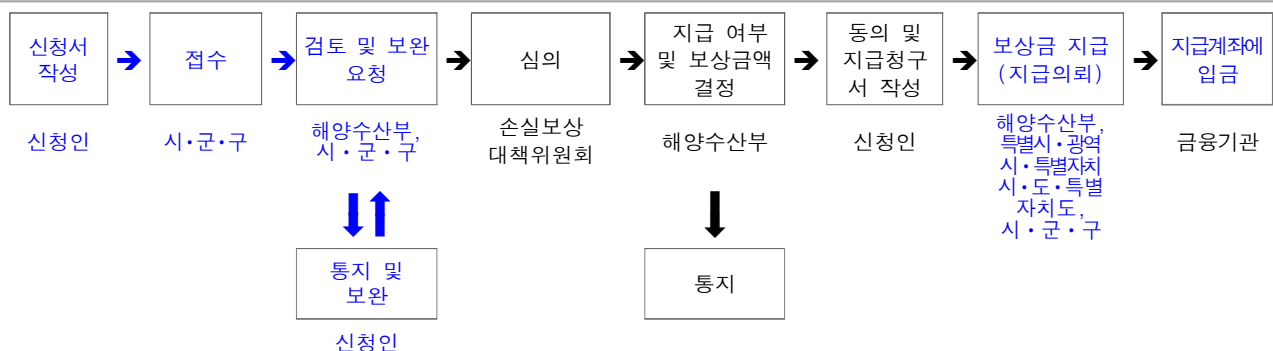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②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종류 및 면허 면적, 시설(어장) 면적 등을 적습니다(시설면적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③·④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면허연장이 불허된 날을 적습니다.
- ⑤란에는 첨부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피해명세(면적을 포함합니다) 및 산출액을 작성합니다.
-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보상금 상속대표자 선정서

※ 아래쪽의 상속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대표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상금 대상자와의 관계 의	
본인들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6조제3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2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3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4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5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상속대표자 선정방법

- 유족 중 보상금 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 참조)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행위이다.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행위이다.
 -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등을 신청한다.
-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 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하여</u>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 략) <u><신 설></u> 3. 4. (생 략) <u><신 설></u>	<u>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u>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 ----- ----- ----- <u>첨부하여 면허 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u>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조에 따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 지시로 인한 면허연장 불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u>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u>피해어업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재산상속인들의 가족</u>

<신 설>

<신 설>

7.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제3항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

③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상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신 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되어 보상금의 지급권리가 상속된 경우로써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속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 <후단 삭제>

<u>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u> <u><신 설></u> <u><신 설></u>	<u>제></u> <u>②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u>
제12조(권한의 위임) (생략) <u><신 설></u>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과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44) 200 - 5643